

제2513호
2017. 4. 26.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조 려	
제137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371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1372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1373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고 시	
제2017-30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2
제2017-31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23
● 공 고	
제2017-32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제2017-325호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공고	5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7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3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 시행령」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주택법」제101조 및 제101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법」제59조 및 제98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및 제99조”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 비고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5호라목 중 “「주택법 시행령」제5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로 개방에 따른 보통 CCTV 설치유지	70	3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u>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 1~6까지는 80%, 7~11까지는 70%로 함.</u>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화의공개시설방의 설치	70	30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4.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5.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70	30	
6.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60	40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60	40	
1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60	4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60	40	■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u>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 1~4까지는 70%, 5~14까지는 60%로 함.</u>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3. 경로당의 보수	60	40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60	40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6.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살나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8.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9.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1.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2.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3.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특점
관 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5)	생중계(5), 녹화(3), 미공개(0)	
	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간별 상세 공개(3)	공개(3), 미공개(0)	
	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2)	사용(2), 미사용(0)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4)	시행(4), 미시행(0)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4)	수립(4), 미수립(0)	
	3.3m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4)	500 원이상(4), 300~500원(3) 100~300원(2) 100원 미만(1)	
투명성 (40점)	2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2)	실시(2), 미실시(0)	
	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2)	공개(2), 미공개(0)	
	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4)	보고(4), 미보고(0)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4)	실시(4), 미실시(0)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여부(3)	점검초치(3), 미점검(0)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3)	가입(3), 미가입(0)	
공동 체 활성 화 (40점)	단지내 봉사활동위한 조직 구성 및 잔담 운영자 지원(4)	구성(4), 미구성(0)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4)	구성(4), 미구성(0)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4)	3강좌이상(4), 1~2강좌(2), 미운영(0)	
	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주민 참여 여부(3)	참여(3), 미참여(0)	
	단지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5% 이내로 개선(3)	개선(3), 미개선(0)	
	단지내 시설물의 인근 주민 개방 여부(3)	2개시설이상(3), 1개시설(2), 미개방(0)	
	통행로 개방 등 이파트간 갈등해소 사업 추진(3)	2개사업이상(3), 1개사업(2), 미추진(0)	
	입주민 등에 의한 제민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3)	안전상정(3), 안전미상정(0)	
	상가대표단,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 압회의 참석 발언(2)	참석(2), 미참석(0)	
	충간소음, 애원권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4)	운영(4), 미운영(0)	
시 책 이 행 (20점)	공동체익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7)	2개사업이상(7), 1개사업(4), 미실시(0)	
	서울시 관리규약준치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3)	적정(3), 미흡(1), 미준수(0)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실천행 여부(5)	적정(5), 미흡(3), 미이행(0)	
	관련자료 제출,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2)	이행(2), 미이행(0)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75점이상	70점이상	65점이상	65점미만	비고
증 감 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 적용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중구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1억원(전체사업비)×70%(중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8천4백7십만원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중구분담률×공동체활성화 등 평가×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
(예시)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 1억원(지원신청액)×50%(중구분담률)×110%(추진실적 결과)×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6천5십만원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 지원예산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 -----.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
제7조의2(지원금의 교부중지 및 반환) ① (생략) 1. ~ 5.(생략) 6.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를 합산하여 연2건 이상인 경우	제7조의2(지원금의 교부중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주택법」 제59조 및 제98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 -----.

현행	개정안																																
[별표](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기준)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table><tr><th>지원사업</th><th>자치구 분담률</th><th>공동주택 분담률</th><th>비고(증감률)</th></tr><tr><td>1.~11. (생략)</td><td></td><td></td><td>■ (생략) 신설</td></tr></table> 나. 공용시설물의 유·관리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table><tr><th>지원사업</th><th>자치구 분담률</th><th>공동주택 분담률</th><th>비고(증감률)</th></tr><tr><td>1.~14. (생략)</td><td></td><td></td><td>■ (생략) 신설</td></tr></table> 2.~4. (생략) 5. 지원제외대상 가.~다. (생략)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증감률)	1.~11. (생략)			■ (생략) 신설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증감률)	1.~14. (생략)			■ (생략) 신설	[별표](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기준)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table><tr><th>지원사업</th><th>자치구 분담률</th><th>공동주택 분담률</th><th>비고(증감률)</th></tr><tr><td>1.~11.(현행과 같음)</td><td></td><td></td><td>■ (현행과 같음) ■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1~6까지는 80%, 7~11까지는 70%로 함.</td></tr></table> 나. 공용시설물의 유·관리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table><tr><th>지원사업</th><th>자치구 분담률</th><th>공동주택 분담률</th><th>비고(증감률)</th></tr><tr><td>1.~14.(현행과 같음)</td><td></td><td></td><td>■ (현행과 같음) ■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1~4까지는 70%, 5~14까지는 60%로 함.</td></tr></table> 2.~4. (현행과 같음) 5. 지원제외대상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증감률)	1.~11.(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1~6까지는 80%, 7~11까지는 70%로 함.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증감률)	1.~14.(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1~4까지는 70%, 5~14까지는 60%로 함.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증감률)																														
1.~11. (생략)			■ (생략) 신설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증감률)																														
1.~14. (생략)			■ (생략) 신설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증감률)																														
1.~11.(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1~6까지는 80%, 7~11까지는 70%로 함.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증감률)																														
1.~14.(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1~4까지는 70%, 5~14까지는 60%로 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주거 환경을 균형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제1조, 제3조, 제7조의2제1항, 제8조, 별표1)
- 나.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준공 15년 경과한 단지)의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자치구 부담률을 기존 50~70%에서 사업종류에 따라 60~80%로 상향조정하여 자부담 완화 (별표1)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71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59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 ----- -----.
제2조(감사 대상) (생략) 1.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주택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략) 4. (생략) <신 설>	제2조(감사 대상) (현행과 같음)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2. 「공동주택관리법」-----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감사일시 결정) ① (생략)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구청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제5조(감사일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주거 환경을 고르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

(제1조, 제2조, 제5조)

나. 공동주택관리 감사대상 항목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항목 추가

-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4호)
-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2조제5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72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제16조(이하 “법”이라 한다) ”를 “「주택법」제1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부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4조제1호 중 “법 제52조제2항”을 “법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를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16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주택법」제16조----- ----- -----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현행	개정안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 이하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공동주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구 법률 고문변호사 6.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4조(기능) (상략)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u>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분쟁사항</u>	1. <u>법제71조제2항</u> -----

현행	개정안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이하 “분쟁조정 신청”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 ----- -----
제11조(조정신청의 반려 등) ① (상략)	제11조(조정신청의 반려 등) ① (현행과 같음)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로서 정한 사항	1.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제12조(조정의 효력)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법 제80조제2항-----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나. 법제처 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했던 것을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개정(제3조제1항)

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 위원의 자격요건을 개정 (제3조제2항)

라. 법제처 권고에 따라 분쟁조정신청 시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한요건 삭제 (제9조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73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비영리 법인이며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하고 있는 조합으로,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구세인 등록면허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3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중구 서소문로 89-20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중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가.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168세대)

2.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사업주체의 성명 : (주)수경하우징 대표 이서준

나. 사업주체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67, 3층 다나빌딩

3. 사업시행 위치 및 개요(변경내용 포함)

가. 대지위치 : 중구 서소문로 89-20(정동 34-7호 외 4필지)

나. 대지면적 : 2,432.1㎡

다. 규 모 : 지하5층/ 지상9층, 연면적 15,490.4830㎡

라. 용 도 :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168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마. 구 조 : 철근 콘크리트구조

바. 변경내용

- 근린생활시설 전용 열방벽아터 위치이동 및 도시형생활주택 설비공간 위치조정
- 연면적 12,8206㎡ 증가

4. 주택건설사업 시행기간 : 2017. 4월 ~ 2018. 9월

5.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 관련내용은 중구 건축과에 비치 보관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3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3-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04월 26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원 / 4,983.4㎡
4. 사업시행자
 - 성명 : 세운삼구역특수목적(주) 대표이사 선권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8 (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변경)일로부터 54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7년 04월 21 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별첨6
8. 건축계획

대지면적 (㎡)	층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용 도	비 고
3,813.4	지하7층/ 지상20층	47,495.01	58.80	874.78	90m이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구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종 류	규모(㎡)	종 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정비 기반 시설	도로	732.8	도로	658.9	세운삼구역 특수목적(주)	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공원	511.1	〃	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합계	732.8	합계	1,170	〃	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9.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3)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건축물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목	면적(m2)		이용 상황 또는지구	소 유 자				연면적 (m2)	소유자		권리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수용/ 사용	1	임정동32	대	0.7	0.7	대	일반상업 지역	오윤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씨-2301	대	일반상업 지역	근생시설 /철근연결 벽조 (총17 층)	1/3 집합건 축물 (총17 층)	509.4	오승준	서울시 중구 임정동 32	압류 가압류 압류 근저당	국 (서초세무서) 대한민국의 (서울지방국세 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하나은행)	개인납세1과-223 세무2과-25821	오영준전체 지분 제2층 제1호~5호			
수용/ 사용	2	임정동32-2	대	72.1	72.1	대	일반상업 지역	오윤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씨-2301						오승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씨-2301					오윤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씨-2301	
수용/ 사용	3	임정동33-1	대	46.3	46.3	대	일반상업 지역	오윤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씨-2301						오석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씨-2301					근저당 채권채무	국 (서초세무서)	오석준 302호지분 제3층 제2호~4호, 제지층
수용/ 사용	4	임정동33-2	대	9.9	9.9	대	일반상업 지역	오윤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씨-2301														
수용/ 사용	5	임정동33-3	대	2.6	2.6	대	일반상업 지역	오윤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씨-2301														
수용/ 사용	6	임정동96	대	59.5	59.5	대	일반상업 지역	이수빈 이지빈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32-804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65 반포아파트 89-303	대	일반상업 지역	근생시설 /연와조	1/2	93.1	이지빈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65 반포아파트 89-303							
수용/ 사용	7	임정동97-1	대	6.3	6.3	대	일반상업 지역	박윤하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10		일반상업 지역	근생시설 /연와조	1/2	183.9	박윤하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10	근저당(2건)	(위해)일은행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53-1				
수용/ 사용	8	임정동97-4	대	766.0	243.6	대	일반상업 지역	박윤하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10	대	일반상업 지역	근생시설 /연와조 관할호텔/철근콘크리트	1/2 1/6	2,014.2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10	근저당(2건)	(위해)일은행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53-1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53-1				
수용/ 사용	9	임정동105	대	32.1	32.1	대	일반상업 지역	양동훈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11동 1603호 (신현동,파크리오)	대	일반상업 지역	주책 /연와조	1/2	155.0	양동훈 양상승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11동 1603호 (신현동,파크리오)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32길 112, 601호 (방배동, 포레빌)	근저당 근저당 채권채무 근저당	김광희 국 (잠실세무서) 김광희	서울 중구 만리동1가 57-12 서울 중구 만리동1가 57-12				
수용/ 사용	10	임정동105-2	대	7.6	7.6	대	일반상업 지역	양동훈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11동 1603호 (신현동,파크리오)								근저당	김광희	서울 중구 만리동1가 57-12				
수용/ 사용	11	임정동106	대	140.8	140.8	대	일반상업 지역	양상승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32길 112, 601호 (방배동, 포레빌)														
수용/ 사용	12	임정동106-1	대	1.3	1.3	대	일반상업 지역	양상승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1동 1103호														
수용/ 사용	13	임정동107	대	79.3	79.3	대	일반상업 지역	이병희	서울 중구 임정동 107	대	일반상업 지역	주책,근생시 설/목조	1/2	99.2	이병희	서울 중구 임정동 107	근저당(3건)	(우유리은행)	서울중구 회현동1가 203				

[illegible]

[illegible]

								정석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2 현대아파트 32동 702호											
								김영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107동 1201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수용/사용	40	일정동173-1	대	6.4	6.4	대	일반상업지역	정봉문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7가 26	대	일반상업지역	첨포/연와조	1/2	13.9	김명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7가 26				
								정석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2 현대아파트 32동 702호						정민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51 107동 1201호				
								정민승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107동 1201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수용/사용	41	일정동175-1	대	220.5	220.5	대	일반상업지역	김용찬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대	일반상업지역	첨포/절근콘크리트	1/4	343.6	김용찬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김용표	서울 중구 신당동 843 신당동 살성아파트 114-104						김용표	서울 중구 신당동 843 신당동 살성아파트 114-104				
								김호중	서울 광진구 554-7 현대아파트 505-301						김호중	서울 광진구 554-7 현대아파트 505-301				
								김희정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08-1301						김희정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08-1301				
								이영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이영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첨포/절근콘크리트	1/3	267.8	김용찬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김용표	서울 중구 신당동 843 신당동 살성아파트 114-104				
															김호중	서울 광진구 554-7 현대아파트 505-301				
															김희정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08-1301				
															이영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수용/사용	42	일정동177-2	대	43.3	43.3	대	일반상업지역	김용찬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대	일반상업지역	첨포/연와조	1/2	119.0	김용찬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김용표	서울 중구 신당동 843 신당동 살성아파트 114-104						김용표	서울 중구 신당동 843 신당동 살성아파트 114-104				
								김호중	서울 광진구 554-7 현대아파트 505-301						김호중	서울 광진구 554-7 현대아파트 505-301				
								김희정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08-1301						김희정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08-1301				
								이영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이영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104				
수용/사용	43	일정동175-3	대	12.6	12.6	대	일반상업지역	김명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7가 26	대	일반상업지역	첨포/연와조	1/2	20.9	김명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7가 26				
								정중훈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7가 26						정중훈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8-1				
															정유진	미합중국 텍사스주 달라스시 모닝글로리 드 라이브 10796번지				

[illegible]

사용	60	입정동109-1	대	3.6	3.6	대	일반상업 지역	서울특별시										
사용	61	입정동109-2	대	22.1	22.1	대	일반상업 지역	서울특별시										
사용	62	입정동97-3	대	4.0	4.0	대	일반상업 지역	서울특별시 중 구										
사용	63	입정동32-1	대	1.3	1.3	대	일반상업 지역	서울특별시 중 구										
사용	64	율지로3가 209-1	도	1,096.9	106.4	도	일반상업 지역	서울특별시 중 구										
사용	65	입정동105-1	도	5.0	5.0	도	일반상업 지역	서울특별시 중 구										
사용	66	입정동29-1	도	3,646.4	621.3	도	일반상업 지역	서울특별시 중 구										
사용	67	입정동173-4	철도	48.1	48.1	철도	일반상업 지역	서울 메트로										
계				9,521.3	4,983.4							44동	7,454.0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32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에 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수료에 대하여 지역주민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 및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부재원의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지원 대상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개정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

나.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 규정 신설

다.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증명서의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 신설

라.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법률명 및 인용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1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세무2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여관동) 전화 02-3396-5255, FAX : 02-3396-8710, freeman@junggu.seoul.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2과(☎3396-5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8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2.「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제7조의 제목“(징수시기)”를“(징수시기와 수수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4종)

(단위: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삭제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건	800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면	550	
(2)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	1건	500	1면추가 150원
(3) 공부등초본·하부원본 (환지예정지·확정지적도 등 포함)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건	500	
(1) 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건	500	
(2) 무허가 건물 확인원			
라. 삭제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건	1,000	
(1)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2,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1,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500	
(4) 생산실적증명	"	500	
(5) 공장저당법제7조증명	"	500	
(6) 원자재(시설재)증명	"	500	
(7)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500	
(8)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75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명칭 변경증명	1건	500	
(2) 무적증명	〃	500	
(3) 삭제			
(4) 부양사실증명	〃	500	
(5) 국제결혼증명(영문)	〃	3,300	재발급 포함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필지	600	
(2) 경계명시증명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	〃	7,5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 칼라발급	1필지	1,500	
아.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1건	500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명	〃	500	
(3)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	〃	500	
(4) 물품, 공사사실증명	〃	400	
(5) 보상금 지불 증명	〃	500	
(6) 삭제(2005.05.16)	〃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1건	1,2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차.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건	500	
카. 공부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1건	150	
타. 삭제			
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문서의 열람 (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 포함)	1건	150	
(2) 개인정보문서의 정정	〃	150	
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관한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우편료별도 부담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93종)

(단위: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	1건	750	
(2) 사도개설허가 및 개축, 증축 또는 변경허가	〃	75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삭제			
(2) 공유재산 대부신청			
· 공유재산대부 신청(신규)	1건	5,000	
· 공유재산대부 신청(갱신 또는 기간 연장)	1건	3,000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950	
(4)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750	
(5) 시영주택(중개축) 승인신청	1건	750	
(6) 삭제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	
(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재교부 신청	1건	800	
(9)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10)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	
(11)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			
· 주유소(조건부등록)	1건	20,000	
· 석유판매업 신고	〃	10,000	
· 용제판매소	〃	10,000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조건부등록)	〃	20,000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조건부등록)	〃	10,000	
(12)건설기계저당권설정(말소)등록신청	1건	1,000	
(13)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14)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	
(15)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20,000	
(16)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	
(17)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 신고	1건	7,000	
(18)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	
(19)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신청	1건	60,000	
(20)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30,000	
(21)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신청	1건	50,000	
(22)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15,000	
(23)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1건	30,000	
(24)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1건	15,000	
(25)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	1건	10,000	
(26)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27)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28)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	
(29)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	
(30)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31)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2)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33)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변경	1건	5,000	
(3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35)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36)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0,000	
(37)공연장 등록	1건	10,000	
(38)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39)영화업 신고	1건	20,000	
(40)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41)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42)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43)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4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45)(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46)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46)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47)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48)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49)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50)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1건	20,000	
(51)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52)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5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54)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55)게임제작(배급)업 등록	1건	20,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56)게임제공업 허가·등록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20,000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	20,000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	20,000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	〃	20,000	
(57)게임제작(배급·제공)업 등 허가·등록 ·신고 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58)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59)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1건	5,000	
(60)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61)승기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62)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1건	4,000	
(63)전기공사업 등록신청	1건	40,000	
(64)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	
(64)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1건	30,000	
(65)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신고	1건	30,000	
(66)전기공사업 승계(상속)신고	1건	5,000	
(67)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	1건	30,000	
(68)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69)체육시설업의 신고(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	1건	30,000	
(70)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	1건	10,000	
(71)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7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건	1,500	
(7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임대허가 신청	1건	1,500	
(74)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1건	100,000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40,000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1건	4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술소 (접골사, 침사, 구사) 개설신고	1건	20,000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술소 (접골사, 침사, 구사) 개설신고 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1건	100,000	
(5)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1건	40,000	
(6)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1건	40,000	
(7)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20,000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800	
(9)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1건	10,000	
(10)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 양수 신고	1건	10,000	
(11)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 양수 신고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3종)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가. 열람 (1) 1일 1시간 이내 무료 (2)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나.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나.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필름·테이프 등	다. 영화필름의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2)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라. 사진필름의 열람 (1)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다. 사진필름의 복제 (1)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라. 사진필름의 인화 (1)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가.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1컷마다 100원 나. 슬라이드의 시청 (1) 1컷마다 200원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나.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다. 슬라이드의 복제 (1)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 1일 1시간 이내 무료 (2)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나.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시청·청취 (1) 1편 1,500원 - 30분 초과 10분마다 500원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나.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1)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3)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다.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2) 700MB 초과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 -----.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현행과 같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 ----- -----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
4.~7. (생략)	4.~7.(현행과 같음)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9.«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0.(생략)	10.(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7조(징수시기) ①·②(생략) <신설>	11. 「서울특별시 중구 성산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②(현행과 같음)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u>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한다.</u>

신·구 별표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개정2013.09.17.)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별표] (개정2017.5.**)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2종)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4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단위: 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단위: 원)
가. 삭제				가. 삭제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	
(2)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	1면	550		(2)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	1면	550	
(3) 공부등·초본·하부원본 (환지에정지·확정지적도 등 포함)	1건	500	1면추가 150원	(3) 공부등·초본·하부원본 (환지에정지·확정지적도 등 포함)	1건	500	1면추가 150원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건	500		(1) 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건	500	
(2)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500		(2)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500	
라. 삭제				라. 삭제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1)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	
<신 설>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2,000	
<신 설>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000	
(2) 생산실적증명	"	500		(4) 생산실적증명	"	500	
(3) 공장지당법제7조증명	"	500		(5) 공장지당법제7조증명	"	500	
(4) 원자재(시설재)증명	"	500		(6) 원자재(시설재)증명	"	500	
(5) 식품환경안전평가(후·폐업) 사실증명	"	500		(7) 식품환경안전평가(후·폐업) 사실증명	"	500	
(6) 의료기관약국(후·폐업) 사실증명	"	750		(8) 의료기관약국(후·폐업) 사실증명	"	750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명칭 변경증명	1건	500		(1) 행정구역명칭 변경증명	1건	500	
(2) 무적증명	"	500		(2) 무적증명	"	500	
(3) 삭제				(3) 삭제			
(4) 부양사실증명	"	500	재발급 포함	(4) 부양사실증명	"	500	재발급 포함
(5) 국제결혼증명(영문)	"	3,300		(5) 국제결혼증명(영문)	"	3,300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에정지 증명	1필지	600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에정지 증명	1필지	600	
(2) 경계명시증명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	7,500		(2) 경계명시증명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	7,5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 칼라발급	1필지	1,500		· 칼라발급	1필지	1,500	

현행				개정안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아. 회계관계 증명				아.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1건	500		(1) 물품납품실적증명	1건	500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명	"	500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명	"	500	
(3)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	"	500		(3)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	"	500	
(4) 물품, 공사사실증명	"	400		(4) 물품, 공사사실증명	"	400	
(5) 보상금 지불 증명	"	500		(5) 보상금 지불 증명	"	500	
(6) 삭제(2005.05.16)				(6) 삭제(2005.05.16)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1건	1,200		(1) 자동차 제증명	1건	1,200	
차. 기타 제증명				차.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건	500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건	500	
카. 공부열람				카. 공부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1건	150		(1) 각종 공부 열람	1건	150	
타. 삭제				타. 삭제			
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문서의 열람 (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 포함)	1건	150		(1) 개인정보문서의 열람 (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 포함)	1건	150	
(2) 개인정보문서의 정정	"	150		(2) 개인정보문서의 정정	"	150	
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한사항				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한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우편료별도 부담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우편료별도 부담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44종)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93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권타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	1건	750		(1) 권타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	1건	750	
(2) 사도개설허가 및 개축, 증축 또는 변경허가	"	750		(2) 사도개설허가 및 개축, 증축 또는 변경허가	"	75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삭제				(1) 삭제			
(2) 공유재산 대부신청				(2) 공유재산 대부신청			
• 공유재산대부 신청(신규)	1건	5,000		• 공유재산대부 신청(신규)	1건	5,000	
• 공유재산대부 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 공유재산대부 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950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950	
(4)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750		(4)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750	
(5) 시영주택(중·개축) 승인신청	1건	750		(5) 시영주택(중·개축) 승인신청	1건	750	
(6) 삭제				(6) 삭제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	
(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공인 중개사 자격증)재교부 신청	1건	800	

현행				개정안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9)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신 설>	1건	10,000		(9)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10)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 주유소 <신 설> • 용제판매소 <신 설> <신 설>	1건	20,000		(10)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	
(11) 건설기계차량권설정(말소)등록신청	1건	1,000		(11)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 • 주유소(조건부등록) • 석유판매업 신고 • 용제판매소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조건부등록)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조건부등록)	1건 " " " "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2)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		(12) 건설기계차량권설정(말소)등록신청	1건	1,000	
(1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		(13)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	
(14) 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20,000		(14)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	
(15)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		(15) 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20,000	
(16)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		(16)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	
(17)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		(17)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	
(18)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및 양수신고	1건	60,000		(18)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	
(19)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30,000		(1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	
(2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및 양수신고	1건	50,000		(20)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30,000	
(21)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15,000		(2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	
(22)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30,000		(22)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15,000	
(23)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		(23) 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1건	30,000	
<신 설>				(24) 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1건	15,000	
(2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25)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부과신고	1건	10,000	
(2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26)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26)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		(27)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27)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		(28)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	
(28)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29)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	
(2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0)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30)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3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1)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변경	1건	5,000		(32)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3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33)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변경	1건	5,000	
(3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		(3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34)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	30,000 10,000		(3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	
(35) 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		(36)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 "	30,000 10,000 10,000	
(36)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7) 공연장 등록	1건	10,000	
<신 설>				(38)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신 설>				(39) 영화업 신고	1건	20,000	
<신 설>				(4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37) 영화상영관 등록	1건	30,000		(4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38)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5,000		(42)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3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4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40)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4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신 설>				(45)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4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4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신 설>				(46)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4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현행				개정안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42)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48)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43)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49)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44)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1건	20,000		(50)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1건	20,000	
(45)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51)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46)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52)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신 설>				(5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신 설>				(54)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47)게임제작업 신고	1건	20,000		(55)게임제작(배급)업 등록	1건	20,000	
(48)게임배급업 신고	1건	20,000		(56)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 설>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20,000	
<신 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	20,000	
(49)게임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	5,000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	20,000	
<신 설>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고	"	20,000	
(50)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		(57)게임제작(배급·제공)업 등	1건	5,000	
(51)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허가·등록 신고 사항 변경신청			
<신 설>				(58)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신 설>				(59)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1건	5,000	
<신 설>				(60)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신 설>				(61)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신 설>				(62)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1건	4,000	
<신 설>				(63)전기공사업 등록신청	1건	40,000	
<신 설>				(64)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	
<신 설>				(64)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1건	30,000	
<신 설>				(65)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신고	1건	30,000	
<신 설>				(66)전기공사업 승계(상속)신고	1건	5,000	
<신 설>				(67)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	1건	30,000	
<신 설>				(68)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신 설>				(69)체육시설업의 신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1건	30,000	
<신 설>				(70)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1건	10,000	
<신 설>				(71)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신 설>				(7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	1건	1,500	
<신 설>				(7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임대 허가 신청	1건	1,500	
<신 설>				(74)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현행				개정안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1건	40,000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1건	4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술소 (접골사, 침사, 구사) 개설신고	1건	4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술소 (접골사, 침사, 구사) 개설신고	1건	40,000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술소 (접골사, 침사, 구사) 개설신고 사항 변경	1건	20,000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술소 (접골사, 침사, 구사) 개설신고 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1건	20,000	
〈신 설〉				(5)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1건	100,000	
〈신 설〉				(6)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1건	40,000	
〈신 설〉				(7)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신 설〉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신 설〉				(9)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1건	8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1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1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62종)

(단위: 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1건(10매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1) 문서대장 등 열람	1매 1매 초과마다	200 100	
(2) 카드·도면 등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10컷 초과시 1	200 100	
(3) 마이크로필름 열람	컷마다	500	
(4)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 초과마다	100 200	
(5) 녹음테이프 시청	1개마다(60분 기준)	50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분 기준)	1,500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700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롤마다(60분 기준)	1,500	
(가) 1권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권마다(30분 기준)	700	
(나) 여러권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7) 영화필름 시청	1권마다(60분 기준)	3,500	
(가) 1권이 1권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권마다(60분 기준)	2,000	
(나) 여러권이 1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1권마다(30분 기준)	200	
(8)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나. 전자자료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200	
(2) 카드·도면의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 200	
(3)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매 1매 초과마다	100 1,500	
(4) 슬라이드 시청	1권 30분 초과시 10	500 200	
(5) 사진필름의 열람	분마다 1컷마다	200 50	
	1매 1매 초과마다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3종)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가. 열람 (1) 1일 1시간 이내 무료 (2)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나.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 1권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2) 여러 권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권(30분 기준)마다 700원 다. 영화필름의 시청 (1) 1권이 1권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권(60분 기준)마다 3,500원 (2) 여러 권이 1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권(30분 기준)마다 2,000원	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나.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 1권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2) 여러 권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권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다. 사진필름의 복제 (1)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현행				개정안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이하	300 100 250		필름· 테이프 등	라. 사진필름의 열람 (1)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라. 사진필름의 인화 (1)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2) 카드·도면 등 사본(1매 기준)	A2 이상 A3 1매 초과마다 B4이하 1매 초과마다	300 300 100 250 50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가.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1컷마다 100원 나. 슬라이드의 시청 (1) 1컷마다 200원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나.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다. 슬라이드의 복제 (1)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장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권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1건마다	5,000 3,000		전자 파일	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 1일 1시간 이내 무료 (2)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나.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 1편 1,500원 - 30분 초과 10분마다 500원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나.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의 복제 (1)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3)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다.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1)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2) 700MB 초과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 (매체비용 별도)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권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1편마다	5,000 3,000				
(5)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6) 마이크로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필름사본(출력물 : 1매 기준)	1컷마다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3,000 300 200 250 150				
(나) 필름복제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필름의 인화	1롤마다 1컷 1매초과마다 3"×5" 5"×7" 8"×10" 1컷마다	1,000 500 200 300 400 6,000				
(나) 사진·필름의 복제 라. 전자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가) 문서·대장등의 사본 (종이출력물 1매 마다) (나) 문서·대장등의 복제	A3이상 B4이하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300 250 250 100				
(2) 카드·도면등(매체비용 별도) (가) 카드·도면의 사본 (종이출력물 1매 마다) (나) 카드·도면의 복제	A3이상 B4이하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300 250 250 100				
(3) 녹화테이프·비디오복제(매체비용 별도) (4)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사진필름의 사본 (종이 출력물)	10분마다 1컷 1매초과마다 3"×5" 5"×7" 8"×10" 10분마다	3,000 250 50 100 150 5,000				
(나)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0분마다	5,000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거나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325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대상시설			해제사유	위험 등급	비 고 (재난위험시설 지정일)
시 설 명	위 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약수시장	다산로10길 12 (신당동 367-4외17)	장*근 외 18인	위험부분 철거 (2017. 3.3.일자)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E	2016. 3. 16

붙임 : 소유자 현황 1부. 끝.

약수시장 소유자 현황

연 번	성 명	주 소
1	안 * 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	임 *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	이 * 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	장 * 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	송 * 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6	이 * 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	최 * 송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	김 * 숙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9	박 * 애	서울 중구 신당동
10	최 * 수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11	김 * 호	서울 중구 신당동
12	이 * 아	서울 중구 신당동
13	이 * 범	서울 중구 신당동
14	홍 * 숙	서울 중구 신당동
15	김 * 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0길
16	정 * 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5길
17	신 * 자	서울시 중구 신당동
18	류 * 제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9	문 *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